

의안번호	2204469
의 퇴 인	이헌승의원
회 답 일	2024.10.30.
추계번호	24D4170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1항제3호 (군 숙소 지원 등) 신설	국가는 군인(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은 제외)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또는 독신자 숙소,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정하여 주거보조비를 지원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9조제1항제3호(군 숙소 지원 등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군인(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은 제외)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또는 독신자 숙소,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정하여 주거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- 개정안은 주거보조비 지급단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주거보조비 지급대상과 「군인보수법」제14조¹⁾ 및 「공무원

1) 「군인보수법」제14조(주택수당)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1조의2²⁾에 따른 주택수당 지급대상이 일치함
- 개정안은 주거보조비 지급단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, 주거보조비 지급 시 주택수당 지급대상, 지급단가의 변화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현재, 「군인보수법」제14조 및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1조의2에 따라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,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정하여 주택수당을 월 16만원씩 지급하고 있음

[표 1] 주택수당 지급 현황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지급 건수(명)	24,605	26,370	28,101	31,582	33,728
단가(천원/월)	80	80	80	80	160
총지급액(백만원/년)	23,621	25,316	26,977	30,319	64,758

자료: 국방부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2)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1조의2(주택수당)

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강등·정직·감봉·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